

사, 협약서 10개 수용 어렵다 노, 휴가 후 타결안 없으면 투쟁 불가피

7.24(목) 14시 계양전기 안산공장에서 9차 집단 교섭이 열렸다. 6.19 8차 교섭에서 결렬한 후 5주 만에 노사가 마주 앉았다. 사용자는 10개 사 20명, 조합은 10개 사업장 45명이 참가했다.



중앙교섭 휴가 넘겨

사용자대표 디와이피 공충국 상무는 “교섭 결렬 중에도 후발 4개사가 의견을 좁히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빠른 진전을 원한다고 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22일 중앙교섭에서 의견일치 노력했지만 불발했다. 경기도 휴가 전 타결 쉽지 않았지만 전향적인 안 제시로 휴가 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인사하며 “폭염에 고생하는 현장 노동자에 관심 갖고 개선에 힘써달라”고 더불어 당부했다.

조건부 3차 제시안?

이어 사측이 제시한 3차 안에는 대한솔루션, 에스제이엠, 우창정기만 임금 제시안을 냈고, 집단 교섭 협약서는 또 ‘추후 제시’였다. 사측은 “기존 협약 중 후발 4사가 수용불가한 안 11가지가 있는데, 기존 협약의 변경·수정·부칙이나 단서조항 첨가 등이 가능한지 조합이 확대해주면 정리된 안을 내겠다”며 제시안에 조건을 달았다.

조합 교섭위원들은 “내놓으면 우리도 내놓을게” 하는 교섭이 어디 있느냐며, 제대로 어려운 조항을 내놓고 협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섭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상당한 공방 끝에 40분 가량 정회를 거쳐 사용자는 기존 집단교섭 합의 중 수용불가한 10개 조항을 정리해 제출했다.

①지부 총회시간(연 4시간), ②지부 교육위원 활동 시간(연 64시간), ③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 ④조합원 징계·해고 제한, ⑤해외공장(합의), ⑥정기검진(2년 1회), ⑦재해보상(평균임금 100%, 조합활동 포함), ⑧지역보육시설 운영, ⑨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 ⑩공민권 행사 보장(투표 2시간) 등 10가지다.

기 합의 훼손 불가, 세부계획 요구

사측은 위 10가지는 후발 4사에 유예·준비 기간을 열어주면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209의 경우 각 사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등 단서조항을 달 수 있으나 나머지는 원안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기 합의 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모베이스전자, 말레동현화성 등 후발사업장은 “이미 3~5년의 시간이 있었다”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휴가 후 빠른 타결 노력

휴가 후 8.7(목) 신한발브에서 10차 교섭을 열고 협약서 정리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휴가 후 2차, 3차 파업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빠른 정리를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8월 휴가 후 교섭 재개와 함께 진전이 없을 시 8.13(수), 8.27(수)에 각각 2, 3차 파업 투쟁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

2025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제시안(3차)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25년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및 지부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I. 지부 요구

1. 임금인상

회사명	금액	회사명	금액
계양전기	추후 제시	대원산업	추후 제시
말레동현필터	추후 제시	디와이피	추후 제시
대한솔루션	월 기본급 12,000원	신한발브공업	추후 제시
에스케이엠	월 기본급 25,000원	모베이스전자	추후 제시
우창전기	월 기본급 15,000원	현대캐피코	추후 제시

2. 화재발생 대비 : 원안 수용

- ①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한 피난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실시한다.
- ③ 회사는 화재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노동자를 대피시킨다.

3. 경기지부 집단교섭 협약

- 추후 제시

II. 통일 요구

1. 작업중지권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 소속 노동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안전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1항에 따른 작업 중지 또는 대피가 있는 경우 노사는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하고, 회사는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1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④ 회사는 협력업체가 작업중지권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I. 중앙교섭 요구

1. 기후위기 대응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단, 조합은 회사의 계획에 따른 집행에 적극 협조하며,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계획은 조합과 협의 후 실행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원안수용)
- 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간 협의로 정한 사안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전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 중앙협약에 따른다.

2025년 7월 24일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